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 ① 계약 당사자
 - ② 계약기간
 -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및대리인에 관한통보 의무
-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 용 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매년 변경되는 급여비용 운영규정 첨부 불필요-급여비용 수가, 비급여비용)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8일까지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4. 이용료 납부는 매월 10일에 납부하며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재가이용 한도액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

2024년 주간보호센터 급여비용

등급		2023년		2024년		인상금(일반 15%)	
		수 가	본인부담금	수 가	본인부담금	수 가	본인부담금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5	39,810	5,972	1,180	177
	2등급	35,760	5,364	36,850	5,528	1,090	164
	3등급	33,010	4,952	34,020	5,103	1,010	152
	4등급	31,510	4,727	32,470	4,871	960	144
	5등급	30,000	4,500	30,920	4,638	920	138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30,920	4,638	920	138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53,360	8,004	1,580	237
	2등급	47,960	7,194	49,420	7,413	1,460	219
	3등급	44,270	6,641	45,620	6,843	1,350	203
	4등급	42,770	6,416	44,070	6,611	1,300	195
	5등급	41,240	6,186	42,500	6,375	1,260	189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42,500	6,375	1,260	189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66,360	9,954	1,960	294
	2등급	59,660	8,949	61,480	9,222	1,820	273
	3등급	55,080	8,262	56,760	8,514	1,680	252
	4등급	53,580	8,037	55,210	8,282	1,630	245
	5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590	239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590	239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73,110	10,967	2,160	324
	2등급	65,720	9,858	67,720	10,158	2,000	300
	3등급	60,720	9,108	62,570	9,386	1,850	278
	4등급	59,190	8,879	61,000	9,150	1,810	272
	5등급	57,690	8,654	59,450	8,918	1,760	264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590	239
13시간 이상	1등급	76,080	11,412	78,400	11,760	2,320	348
	2등급	70,480	10,572	72,630	10,895	2,150	323
	3등급	65,110	9,767	67,100	10,065	1,990	299
	4등급	63,600	9,540	65,540	9,831	1,940	291
	5등급	62,100	9,315	63,990	9,599	1,890	284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590	239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 ③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예방관리, 협약센터 진료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⑤ 위의 1~4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은 보호자에게 청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아래의 6항에 명시하여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중 추가로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가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어르신의 만성질환 또는 응급질환으로 의료센터의 진료, 검사, 투약 등의 발생 시 보호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본원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진행한 경우에는 발생한 실비용에 대하여 추후 청구한다. 단, 대행비용을 따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나. 어르신의 개인적인 기호, 요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적인 물품, 간식류, 건강보조용품, 영양제류 등의 구입을 대행한 경우 발생한 실비용에 대하여 추후 청구한다.

다. 어르신의 입소 기간 중 전염성질환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건강검진으로 발생한 실비용에 대하여 추후 청구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